

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
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0 월 18 일

여 수 시 장 2024.10.18



여수시 조례 제2141호

붙임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141호

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)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율”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